

전기공사업

■ 업무내용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1인포함)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학경력자	초급, 중급,고급,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능장	전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4.08.29 기준

업종	자본금	신규등록 시 예치금
전기공사업	1.5억원	37,500,000 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